#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개정고시
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,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·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한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6. 12. 2.

## 부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

#### 제1조(목적)

이 고시는 "낚시관리 및 육성법"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조 제8호의 낚시어선업자에게 명령하는 사항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다.

#### 제2조(적용범위)

이 고시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낚시어선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낚시어선업자와 그 어선의 승객(이하 "낚시객"이라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# 제3조(영업시간)

- ① 선외기를 설치한 낚시어선과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 미설치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전부터 일몰 30분후까지로 한다.
- ②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가 설치된 선내기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03:00~22:00 까지로 한다. 단,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가 설치된 3톤이상 선내기 낚시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항해가능시간을 적용한다.
- ③ 제2항 단서의 레이더 및 야간항해장비가 설치된 3톤 이상 선내기 낚시어선은 야간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 - 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-21호에서 정한 어로·항해 금지해역에서의 어로·항해 금지시간(22:00~03:00) 준수

- 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어선장비의 고장, 인명사고,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 등 부 득이한 사유로 금지시간 중 금지해역으로의 입항을 원할 경우, 어업무선국과 관 할 군부대 지휘통제실 및 출입항 신고소에 사전 유선신고 이행
  - 가. 사전 유선신고 미이행으로 군부대 해안경계 작전간 오인관측/사격발생시 모든 인명, 장비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낚시어선업자가 책임을 진다.
- 3. 제1호에 따른 어로·항해 금지시간 외 야간 출입항 시에도 군 작전에 지장이 없 도록 관할 군부대 지휘통제실에 사전 유선신고 이행
- 4. 제1호에 따른 어로·항해 금지시간 중 연안에서 3마일 이내 어로 및 조업 금지

#### 제4조(영업구역)

- ①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부산광역시 관할 수역으로 한다.
- ②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호의 해역에서 낚시객으로 하여금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1. 항만법에 의해 지정된 부산항 묘박지 내의 해역
  - 2.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, 해사안전법, 원자력 안전법, 항만법,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,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보호구역 및 제한·통제구역
- ③ 낚시어선업자는 관내 모든 도서 및 갯바위, 간출암에 낚시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그 외 지역 중 소유자나 관리청이 있을 경우 소유자 및 관리청이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.
- ⑤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 및 구역에서 낚시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거나 안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VHF (DSC) 통신기를 설치한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.
  - 1. 3톤 미만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이상
  - 2. 3톤 이상 5톤 미만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5마일 이상

#### 제5조(낚시어선업자의 준수사항)

-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낚시객을 안내한 때에는 낚시객과 상호 연락체계 (선주·선원의 전화번호 및 낚시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)를 유지하며,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상황 발생시 낚시객을 안전하게 대피조치 하여야 한다.
- ② 낚시어선업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비안전서, 경찰관서, 군부대, 소방서 등에 대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③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구·군 관할 수역에 낚시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(수역·육역)를 관할하는 구청장·군수가 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정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④ 낚시어선업자는 『수산자원관리법』제14조에 규정된 수산동물의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(체중)을 낚시객에게 안내하여야 하며, 금지기간 또는 금지체장 (체중)의 수산동물을 포획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방류토록 안내하여야 한다.
- ⑤ 낚시어선업자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및 휴지통을 비치하여야 한다.
- ⑥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V-PASS(어선위치발신장치) 또는 VHF(DSC)를 설치하거나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 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된다. 단, 출·입항신고기관 (관할 해양경비안전센터 또는 출장소)에 통신기기 중단 사유를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, 통신, 기관, 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.
- ⑧ 낚시어선업자는 출항에 앞서 본 고시내용을 낚시객에게 충분히 숙지시켜야 하며, [별표]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준수사항을 당해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낚시어선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⑨ 낚시어선업자는 선원에게 본 고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하며, 선원의 고시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낚시어선업자가 책임을 진다.

#### 제6조(낚시객의 준수사항)

- ① 낚시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낚시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
  - 2. 낚시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『수산자원관리법』 제14조에 규정된 포획 금지 기간 또는 금지체장(체중)의 수산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.
  - 3. 낚시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- 4.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피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.
  - 5. 낚시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.
  - 6. 낚시객은 낚시어선 승선시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하며,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.
- ② 낚시객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1.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
- 2.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- 3.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- 4. 인명구조용 장비나 기타 낚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
- 5. 폭발물, 인화물질등 위험물을 일반승객과 함께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
- 6. 영업시간외 항행.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- 7.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, 취사, 야생 동·식물을 반출·입하는 행위

### 제7조(승선정원 등의 게시방법)

낚시어선업자가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은 별표와 같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고시의 폐지)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06-74호(2006.08.04.)는 폐지한다.
- ③ (다른 고시의 폐지)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2-155호(2012.12.24.)는 폐지한다.

## [별표]

# 신고확인증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

## 1. 게시방법

가. 재질 :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

## 나. 색상

1) 글씨 : 흑색

2) 바탕 :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- 백색 낚시객준수사항 - 노란색

3)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

당해 낚시어선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정한 크기로 조정하되,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아래의 (예시)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

## 2. 게시장소

당해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

## 3. 게시문

[붙임]

#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

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,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.
- 2) 승객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(체중)의 수산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합니다.
- 3) 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.
- 4)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피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.
- 5) 승객은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합니다.
- 6) 승객은 승선시 구명동의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.
- 7)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  - 가. 정원초과 승선 요구 행위
  - 나. 낚시어선업자(선원)의 구명동의 착용 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 위반 행위
  - 다. 음주 및 질서문란 행위
  - 라. 기물파손 행위
  - 마. 폭발물 등 위험물 반입 행위
  - 바.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위반 요구
  - 사. 쓰레기 투기, 취사, 야생 동·식물 반출입 행위